

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□ 펀드명 : 트러스트증권채권증권모투자신탁[채권]

변경 사유	변경 전	변경 후
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	<p>제13조(자산운용지시 등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③ ~ ④ (생략)</p>	<p>제13조(자산운용지시 등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<u>한도로 하여</u>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③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	<p>제18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6조 제4호 내지 제8호, 제17조 제2호 내지 제8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③ ~ ④ (생략)</p>	<p>제18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6조 제4호 내지 제8호, 제17조 제2호 내지 제8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 <u>로 하며, 금융투자업규정 제4-54조2 규정에 대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는 6개월까지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3호의 경우 이를 따른다)</u>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
<p>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</p>	<p>제 23 조(판매가격)</p> <p>①(생략)</p> <p>②제 1 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투자신탁의 투자자가 17 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<u>제 3 영업일</u>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</p>	<p>제 23 조(판매가격)</p> <p>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제 1 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투자신탁의 투자자가 17 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<u>3 영업일</u>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</p>
<p>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</p>	<p>제25조(환매가격 및 환매방법)</p> <p>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자투자신탁이 집합투자업자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<u>제2영업일</u>(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<u>제3영업일</u>)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</p> <p>②제24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(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)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<u>제4영업일</u>(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17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<u>제4영업일</u>)에 자투자신탁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</p> <p>③(생략)</p>	<p>제25조(환매가격 및 환매방법)</p> <p>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자투자신탁이 집합투자업자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<u>2영업일</u>(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<u>3영업일</u>)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</p> <p>②제24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(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)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<u>4영업일</u>(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<u>4영업일</u>)에 자투자신탁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</p> <p>③(현행과 같음)</p>
<p>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</p>	<p>제41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</p> <p>① ~ ④ (생략)</p> <p>⑤제4항에 따른 손실 등의 보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<u>제5영업일</u> 이내에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⑥ (생략)</p>	<p>제41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</p> <p>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제4항에 따른 손실 등의 보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<u>5영업일</u> 이내에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(현행과 같음)</p>

<p>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</p>	<p>제42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2. (생략) 3.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.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<p>② ~ ④(생략)</p>	<p>제42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<u>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)</u>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.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 <u>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)</u>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<p>② ~ ④(현행과 같음)</p>
	<p><신 설></p>	<p><u>부 칙</u> 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22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